#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09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정동만·정희용·박성민

구자근 • 이상휘 • 조승환

김태호 · 최은석 · 엄태영

이인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훈령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공과금 등을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부 및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통일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요금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은 거주자인 공무원 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3조의2(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① 거주용 행정재산이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 외관 및 기본설 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전기·수도·통신요금 등과 소모성 비품의 교체 비용 등 거주에 드는 비용은 거주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부담한다.
  - 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83조의2(거주용 행정재산에 대
	한 비용부담) ① 거주용 행정
	재산이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 외
	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② 전기·수도·통신요금 등과
	소모성 비품의 교체 비용 등
	거주에 드는 비용은 거주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
	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이 부담한다.
	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